

# 탄자니아 (Tanzania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| 구 분              | 2017                        | 20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제도               | 5개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| 2개 제도(공적/사적)                       | 제도 통합   |
| 보험료율             | 가입자10%<br>사용자10%~20%        | 공적(노5%/사15%),<br>사적(노10%/사10%~20%) | 보험료율 분리 |
| 연금수급 개시 연령       | 60세                         | 60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
|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| 18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| 18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
| 노령연금 지급률(40년 기준) | 82.7%                       | 82.7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
| 일시금              | 최종 60개월 평균보험료<br>× 보험료 납부월수 | 총납부보험료+이자<br>-실업급여액                | 지급기준 변동 |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42년(정부근로자), 1944년(지자체), 1954년(공공서비스), 1964년(적립기금)
- 현행법 : 1997년(사회보험, 1998년 시행), 2008년(규제기구), 2018년(공공서비스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- ※ 2018년 법을 통해, 4개의 분리된 연금제도를 통합함 : 정부근로자적립기금(GEPF), 지자체연금기금(LAPF), 준정부기관연금기금(PPF), 공공서비스연금기금(PSPF)
  - 이 법에 따라, 공공서비스사회보장기금(PSSSF)이 공적부문 근로자의 제도를 운영하고,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이 사적부문 근로자 및 자영자 제도를 운영함
  -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, 다음의 정보들은 두 제도에 적용됨

## 3 적용대상

- 공적부문제도 : 공적부문근로자(공무원, 지방정부근로자, 경찰 및 교도관, 법무관 포함)
  - 군인 및 특정 고위공무원을 위한 특별 제도
- 사적부문제도 : 사적부문 근로자(탄자니아 본토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및 국제기구 근로자 포함)
  - 자영자는 임의적용

- 가입자
  - 공적부문제도 : 월 급여의 5%(보너스, 초과근무수당, 기타수당 제외)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/하한 소득 기준 없음
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 및 실업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  - 사적부문제도 : 월 총 급여의 10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/하한 소득 기준 없음
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, 의료급여, 실업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- 자영자
  - 공적부문제도 : 비적용
  - 사적부문제도 : 월 소득의 10% ~ 20%
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, 의료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- 사용자
  - 공적부문제도 : 월 임금의 15%(보너스, 초과근무수당, 기타수당 제외)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/하한 소득 기준 없음
    - 사용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 및 실업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  - 사적부문제도 : 월 총임금의 10% ~ 20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/하한 소득 기준 없음
    - 가입자의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, 의료급여, 실업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- 정부
  - 공적부문제도 : 없음 ; 단, 사용자로의 보험료 납부
  - 사적부문제도 : 없음

- 노령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. 고령인 상태에서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 납부요건은 165개월(45세)에서 45개월(55~59세)까지 변경 적용됨
 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 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55세부터 가능
    - 조기연금은 최저연금월액 이상이어야 함
    - 최저연금월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40%
  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경제부문에 따라 100,000shillings ~ 400,000shillings
  - 연기연금 : 연금 지급은 연기될 수 있으며, 연령 제한은 없음
- 노령청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 : 60세에 도달하였으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
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
○ 장애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
- 소득능력 66.7% 이상 상실 판정 그리고, 보험료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 또는 장애 발생 직전 12개월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 이상
- 노령연금액 가치가 장애연금액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노령 연금으로 대체됨
- 보건부 지명 의사로 구성된 의료위원회에서 소득 능력 상실 판정
  - 의료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

○ 장애청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 : 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했다고 판정받았으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
- 보건부 지명 의사로 구성된 의료위원회에서 소득 능력 상실 판정
  - 의료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

○ 유족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니지만, 18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
- 수급가능 유족
  - 45세 이상 배우자(15세미만 자녀 양육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 - 18세 미만 고아(전업 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 - 수급권 있는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수급
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정지됨

○ 유족청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던 경우 지급
- 수급가능 유족
  - 45세 이상 배우자(15세미만 자녀 양육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 - 18세 미만 고아(전업 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 - 수급권 있는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수급

○ 장제비(사적부문제도에 한정)

- 사망자가 보험료 납부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사망 당시 고용 중인 경우,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- 사망일로부터 60일 안에 청구 필요

**6** 급여종류별 지급액

□ 노령급여

○ 노령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
- 월 연금액 = 가입자의 연간연금산정보수액(APE) × 보험료 납부개월 수 × 1/580(증가비율) ÷ 12

- 가입자가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, 연금액은 연간연금산정보수액의 75%를 적용하여 산정
  - 일시금 액수는 가입자의 연간연금산정보수액의 25% × 보험료 납부개월 수 × 1/580(증가비율) × 대체상수 12.5로 산정
  - 가입자가 종전에 국가적립기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가입기간 인정받음(크레딧)
  - 연간연금산정보수액(APE)은 퇴직 전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3년 동안의 가입자 연 평균소득
  - 위의 연금액 산정식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 4개 제도 중 1개 제도에 보험료를 최초 납부한 모든 자 및 2014년 7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, 준정부기관연금기금(PPF), 정부근로자적립기금(GEPF)의 모든 현재 가입자에게 적용됨
    - 2014년 6월 30일, 지자체연금기금(LAPF) 및 공공서비스연금기금(PSPF)의 가입자였던 자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
  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40%
   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100,000 ~ 400,000 shillings (경제부문에 따라 차이)
  - 월 최대연금액
    - 사적부문 근로자 : 연금액 산정에 사용된 가입자 월 소득의 72.5%
    - 공적부문 근로자 : 가입자의 총 근무기간 중 가장 높은 적용 소득의 66.6%
 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전 청구 시기 매월마다 0.3%씩 감액
  - 연기연금 :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
  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됨
- 노령청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 : 가입자 및 사용자 총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고, 실업급여 지급액을 차감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## □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  - 월 연금액 = 가입자의 연간연금산정보수액(APE) × 보험료 납부개월 수 × 1/580(증가비율) ÷ 12
  - 가입자가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, 연금액은 연간연금산정보수액의 75%를 적용하여 산정
  - 일시금 액수는 가입자의 연간연금산정보수액의 25% × 보험료 납부개월 수 × 증가비율 × 대체상수 12.5로 산정
  - 가입자가 종전에 국가적립기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가입기간 인정받음(크레딧)
  - 연간연금산정보수액(APE)은 장애 전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3년 동안의 가입자 연 평균소득
  - 위의 연금액 산정식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종전 4개 제도 중 1개 제도에 보험료를 최초 납부한 모든 자 및 2014년 7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, 준정부기관연금기금(PPF), 정부근로자적립기금(GEPF)의 모든 현재 가입자에게 적용됨
    - 2014년 6월 30일, 지자체연금기금(LAPF) 및 공공서비스연금기금(PSPF)의 가입자였던 자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
  - 월 최저장애연금액은 월 연금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30%

- 급여조정 :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됨
- 장애청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 : 일시금 지급

## □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  - 배우자연금
    - 사망자가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의 40%를 지급
    - 단, 수급자격 있는 고아가 없다면 100% 지급
    - 유족배우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
    - 가입자 사망 당시 45세 미만 배우자 또는 15세 미만 피부양자녀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연금 최대 2년간 지급
  - 고아연금
    - 사망자가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의 60%를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에게 균분 지급
    - 완전고아에게는 100%
  - 부모연금
    - 기타 수급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의 100%를 사망자의 부모에게 지급
  - 유족은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선택 가능
    - 일시금 액수는 사망자의 연간연금산정보수액(APE)의  $25\% \times 1/580$ (증가비율)  $\times$  대체상수 12.5로 산정
    - 연간연금산정보수액(APE)은 사망 전 최종 10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3년 동안의 사망자 연 평균소득
  - 통합된 유족연금 상한액은 사망자가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의 100%임
  - 급여조정 : 급여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되고 해당 제도 기금의 계리적 가치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유족청산금(공적/사적부문제도)
  - 사망자가 수급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33배(사적부문근로자) 또는 36배(공적부문근로자)를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제비(공적/사적부문제도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용된 사망자의 최종월 소득에 기초하여, 150,000 ~ 600,000 shilling의 일시금 지급

## 7 관리운영기관

- 총리실 소속 노동·청소년·고용·장애인부  
(Prime Minister's Office, Labour, Youth, Employment and Persons with Disability)
  - 전반적 감독
  - <http://www.kazi.go.tz>

- 사회보장규제국(Social Security Regulatory Authority)
  - 공적·사적 부문 제도의 집행을 규제 및 감독
  - <http://www.ssra.go.tz>
  
- 공공서비스사회보장기금(PSSSF)
  - 공적 부문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
-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
  - 사적 부문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